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 3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재안이유

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보급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,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조례제정과 구기종을 제외한 농기계의 종류, 읍·면·동 위임관리사항을 개정하고자함.

☐ 주요골자

가. 농기계의 현대화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기종을 제외하여 농기계의 종류 조정(안 제2조)

나.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의 위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농기계 사용신청에 대한 편의제공과 농기계 관리의 도모(안 제3조, 안 제6조)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“기계류”를 “농기계류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시유 기계류”를 “시유 농기계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2조(종류) 이 조례에 의한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동력경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2.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3. 농업용트랙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4. 고성능분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5. 콤바인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6. 이앙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
7.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

제3조 제목 “위임관리”를 “관리”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 제4항을 제2항으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- 제1조중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- 제4조중 “농촌지도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소 관 실 · 과 · 소		농업기술센터(☎940-4900)
입 안 자	농업기술센터 소장	박 노 직
	농 업 진 흥 과 장	김 규 현
	기 술 기 획 담 당	조 양 훈
	담 당 자	장 흥 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파주시 <u>기계류</u> 관리조례	파주시 <u>농기계류</u> 관리조례
제1조(적용)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<u>시유 기계류</u> (이하 “기계류”라 한다)의 관리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조(적용)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<u>시유 농기계류</u> (이하 “기계류”라 한다)의 관리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2조(종류) 이 조례에 의한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<u>동력경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2. <u>양수기(발동기 포함)(한해대책용)</u> 3. <u>동력살분기 및 분무기</u> <u>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4. <u>토운차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5. <u>천공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6. <u>농업용트랙타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7. <u>전동펌프(한해대책용)</u> 8. <u>고성능분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9. <u>콤바인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10. <u>이앙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11. <u>바인다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12. <u>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</u>	제2조(종류) 이 조례에 의한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<u>동력경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2. <u>동력살분기 및 분무기</u> <u>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3. <u>농업용트랙타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4. <u>고성능분무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5. <u>콤바인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6. <u>이앙기(농업기술보급사업용)</u> 7. <u>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</u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임관리) ①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에 관한 권한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·면·동장(출장소장)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(생략)	제3조(관리) ① (삭제) ② (삭제) ① (현행 ③항과 같음) ② (현행 ④항과 같음)
제6조(사용신청) ②읍·면·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. (개정 99. 5. 15)	제6조(사용신청) ② (삭제)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<u>농촌지도소</u>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<u>농업기술센터</u>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관리) ①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<u>농촌지도소장</u>이 한다.	제4조(관리) ①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<u>농업기술센터소장</u>이 한다.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 보급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관리효율을 높이고,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조례 제명과 구기종을 제외한 농기계의 종류·읍·면·동 위임관리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“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”를 “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”로 개정(제명)
- 나. 농기계의 현대화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기종을 제외하여 농기계의 종류조정(안 제2조)
- 다.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의 위임관리규정을 삭제하여 농기계 사용 신청에 대한 편의제공과 농기계 관리를 도모(안 제3조, 안 제6조)

□ 검토의견

- 가.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한해대책용으로 보유 이용하고 있는 농기계중 사용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수기, 토운차, 천공기, 전동펌프, 바인더 등을 삭제하고,
- 나. 위임관리에서 기계류에 관한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관리토록 한 것과, 위임관리에 필요한 사항(제3조제2항, 제6조)을 삭제하고 있으며,
- 다.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“농촌지도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개정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